

회칙 개정안 공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감선회 모든 회원들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세계선교사회의 회칙 개정안을 회칙 3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경과 보고

- 12차 확대임원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본회 총무를 포함한 4인의 위원을 임명하여 위원회를 조직함.
- 위원회 논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여 임원회에 상정함.
- 임원회 논의 후 선교국과 협의하여 개정안 최종안 마련함.

■ 15대 감선회 회칙개정위원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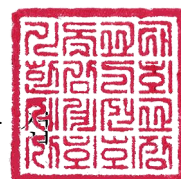
- 위원장: 박신선
- 위 원: 허훈(서기), 박효준(본회 총무), 신현미, 이준상

■ 주요 개정 내용

1. 회원제도 정비: 명예회원 제도 폐지하고 준회원 제도 신설, 정회원과 준회원 구체적으로 명시.
2. 총회: 감사와 위기관리위원 선출 등 권한 추가
3. 확대임원회와 임원회 정비: 감사를 확대임원으로 대상 확대, 임원회에 집행 부서 추가 구성.
3. 파견 위원: 위기관리위원 역할 강화, 여타 파견 위원 선출 절차 명시.
4. 권역 정비: 권역을 12개에서 10개로 정비
5. 위원회 정비: 분과위원회는 사역의 네트워킹 조직으로, 소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구체화, 여성선교사회는 특별조직으로 정비
6. 회칙개정 과정 및 맞춤법 등 자구 수정

2025년 3월 11일

제15대 기독교대한감리회세계선교사회장 윤 광



제15대 기독교대한감리회세계선교사회 회칙개정위원장 박 신 선

기독교대한감리회세계선교사회 회칙

[현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이라 함.) 세계선교사회'(약칭 '감선회', 이하 '본회'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Methodist Missionary Fellowship'(영문 약칭 'KMMF')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기감선교사들의 상호협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목표]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감리교 세계선교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하 '선교국'이라 함.) 및 선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선교사 상호간의 유대 및 협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3. 선교사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4. 기감 선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한다.

제 2 장 조 직

제 1 절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선교국의 파송을 받은 이로 한다. 부부사

[개정안]

(밑줄 친 파란색이 개정되는 부분)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기감'이라 함.) 세계선교사회'(약칭 '감선회', 이하 '본회'라 함.)라 하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Methodist Missionary Fellowship'(영문 약칭 'KMMF')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기감선교사들의 상호협력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세계선교를 위하여 함께 연구하고 나눔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목표]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갖는다.

1. 감리교 세계선교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독교대한감리회 선교국(이하 '선교국'이라 함.) 및 선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 선교사 상호간의 유대 및 협력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다.
3. 선교사의 교육 및 복지에 관한 사업을 추진한다.
4. 기감 선교사의 정체성 확립과 비전을 제시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선교사로 선교국의 파송을 받은 교역자

역자는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는다.

2. **명예회원**: 선교사로 은퇴한 이, 명예 선교사로 파송 받은 이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 임원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본회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2 절 총 회

제 7 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2. 정기 회의는 격년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교사, 평신도선교사, 전문인선교사로 한다. 부부 사역자는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는다.

2. **준회원**: 선교국의 파송을 받은 이 중에서 정회원을 제외한 선교사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본회 임원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준회원**은 본회의 제반 사업에는 참가할 수 있으나, 본회의 선거권(추천권 포함)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제 6 조 [회원의 의무]

1.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 및 제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제 3 장 조 직

제 1 절 총 회

제 7 조 [지위 및 구성]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회를 두고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8 조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2. 정기 회의는 격년제로 의장이 소집한다. 정기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개회 2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①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50인 이상의 총회원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②'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권역대표, 나라대표 선출 및 인준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 10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3.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는 선출된 회장이 의사를

의장이 소집한다.

- ① 의장이 긴급한 사안이 있어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② 50인 이상의 총회원이 회의의 목적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②'의 경우 의장은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총회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그때까지 공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집을 요구한 자가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업무 및 권한]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권역대표, 나라대표, 분과위원장 인준에 관한 사항
5.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사항

제 10 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성립한다.
2. 총회는 이 회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 11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총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사고가 있거나 위임한 때에는 선임 부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맡는다.
3. 새 회장이 선출된 후에는 선출된 회장이 의사를

진행한다.

제 12 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1.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명예회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13 조 [안건 상정]

1. 안건은 임원회가 발의하여 회의를 시작할 때 상정한다.
2. 임원회가 발의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참석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제 3 절 확대임원회의

제 14 조 [지위]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로 전반적인 정책을 토의하고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확대임원회의를 둔다.

제 15 조 [구성] 확대임원회는 임원, 고문단(직전 회장을 제외한 역대 회장), 권역 대표, 나라 대표, 연회 대표로 구성한다.

제 16 조 [종류 및 소집]

1. 확대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2. 확대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대회 8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회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 회의를 소집할 때는 대회 4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진행한다.

제 12 조 [회의의 공개와 발언]

1. 총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준회원은 의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못한다.

제 13 조 [안건 상정]

1. 안건은 임원회가 발의하여 회의를 시작할 때 상정한다.
2. 임원회가 발의하지 않은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때는 총회 참석 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제 2 절 확대임원회

제 14 조 [지위와 권한] 본회의 최고 운영기구로 전반적인 정책을 토의하고 외부 위원회 또는 단체에 파견하는 위원을 선출하는 등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확대임원회를 둔다.

제 15 조 [구성] 확대임원회는 임원, 고문단(직전 회장을 제외한 역대 회장), 권역 대표, 나라 대표, 연회 대표, 감사로 구성한다. 단, 5가정 미만인 나라는 그 나라 선교사들의 추천을 받은 이가 확대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 16 조 [종류 및 소집]

1. 확대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한다.
2.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의장이 소집하고, 대회 8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 회의는 구성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할 때는 의장이 직권으로 소집할 수 있다.
4. 임시 회의를 소집할 때는 대회 4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정책회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 절 임원회

제 18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단**: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 등
2. 부회장은 회장 지명 1인과 **여성분과위원장**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며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가 맡는다.
3. 직전 회장
4. **분과위원장(선교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등)**
5. **분과위원회 부장: 각 분과위원회 산하의 부장**
6.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 2인

제 19 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파송된 지 15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 중에서 선출하며 4년간(연속)의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2.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나라 대표 또는 권역 대표 또는 임원을 역임해야 하며, 직전 총회 2회 연속으로 현장 출석했어야 한다.
3. 총무는 파송된 지 10년 이상(**휴직 기간 제외**) 된 이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부 선교국의 임

제 17 조 [의장]

1. 의장은 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확대임원회**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의사를 진행한다.
2. 의장이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임원회

제 18 조 [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부회장 2인, 총무 1인, 회계 1인, 서기 1인, **각 부서의 부장** 등
2.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한** 부총무, 부회계, 부서기, **각 부서의 차장** 등
3. 부회장은 회장 지명 1인과 **여성선교사회장** 1인, 총 2인으로 구성하며 선임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한 이가 맡는다.
4. 직전 회장
5.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 2인

제 19 조 [임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파송된 지 1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선출하며 4년간(연속)의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2. 회장 선출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나라 대표 또는 권역 대표 또는 임원을 역임해야 하며, 직전 총회 2회 연속으로 현장 출석했어야 한다.
3. 총무는 파송된 지 10년 이상 된 이로 한다.

제 20 조 [임원의 선출]

1. 회장 선출: 총회에서 선출하여 본부 선교국의 임

명을 받는다. 총회 재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총회에 위임한다. 단 투표권은 현장 참석자만 갖는다.

2. 회장 선출 공고: 회장 선출 공고는 총회 2개월 전에 총회 공고와 함께한다.
3. 회장 입후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30일 전까지 이력서, 회원 30인(5개국 이상) 이상의 추천서, 정책 소견서(A4 1장 이내)를 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이는 선교국 홈페이지와 선교사 대회 자료집에 이력서, 정책 소견서와 함께 공고한다.
5. 임원 선출: 선임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는 회장이 지명한다.
6.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회계, 부서기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2. 권역 대표와 나라 대표의 임기는 권역별, 나라별 회기에 따른다.

제 22 조 [보궐 선출 및 임기] 임원이 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이 보궐 선출한다.

1. 회장은 부회장(선임)이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제 20 조 5항과 6항에 의거하여 재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무를 처리한다.

명을 받는다. 총회 재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선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단 투표권은 현장 참석자만 갖는다.

2. 회장 선출 공고: 회장 선출 공고는 총회 2개월 전에 한다.
3. 회장 입후보: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이는 총회 30일 전까지 이력서, 회원 30인(5개국 이상) 이상의 추천서, 정책 소견서(A4 1장 이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고: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이 중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이는 선교국 홈페이지와 본회의 공식 단체 대화방, 선교사 대회 자료집에 이력서, 정책 소견서와 함께 공고한다.
5. 임원 선출: 선임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각 부서의 부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6. 회장은 필요에 따라 부총무, 부회계, 부서기와 각 부서의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 2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단임으로 한다.

제 22 조 [보궐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유고 시, 다음 절차에 따른다.

1. 회장은 부회장(선임)이 승계하며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승계한 회장은 단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 회장 이외의 임원은 제 20 조 5항과 6항에 의거하여 재선출하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23 조 [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대내외 회무를 총괄하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선임 부회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각종 회무를 처리한다.

4. 서기는 각종 회의 기록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6. 직전 회장 본회를 자문한다.

제 24 조 [감사]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2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사업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5 조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조성된 선교사위기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에 선교사 대표로 파견할 2인의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3 장 권역 및 위원회

제 26 조 [권역 편성] 세계를 동북아시아권역, 동남아시아권역, 인도차이나권역, 서남아시아권역, **중동지역**, 중앙아시아권역, 아프리카권역, 오세아니아권역, **중남미권역**, **북미권역**, **동유럽권역**, **서유럽권역**의 12권역으로 구분한다.

제 27 조 [권역 대표]

1. 해당 **지역**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권역 모임을 주

4. 서기는 각종 회의 기록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5. 회계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와 **본회 공식 단체대화방**에 게시한다.

6. 복지부장은 위기관리 업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7. MK사역부장은 MK대회와 MK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8. 회장은 업무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여타의 부서를 두고 부장과 차장을 임명할 수 있다.

9. 직전 회장**은** 본회를 자문한다.

제 24 조 [감사] 본회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총회에서 2명의 감사를 선출한다. 감사는 이 회의 재정과 사업 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25 조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 위원] 세계선교기금 지원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조성된 선교사위기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 선교사위기관리위원회에 선교사 대표로 파견할 2인의 위원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선출된 2인의 위원은 본회의 선교사 위기관리 업무 담당자와 함께 위기관리기금 신청 서류를 심사한다.

제 4 장 권역 및 나라 선교사회

제 26 조 [권역 편성] 세계를 동북아시아권역, 동남아시아권역, 인도차이나권역, 서남아시아권역, **북아프리카·중동권역**, 중앙아시아권역, 아프리카권역, 오세아니아권역, **아메리카권역**, **유럽권역**의 10권역으로 구분한다.

제 27 조 [권역 대표]

1. 해당 **권역**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권역 모임을 주

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지역** 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권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 방법은 권역 **모임에 위임한다**.

제 28 조 [나라 대표]

1.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나라선교회를 조직한다. 나라 대표는 해당 나라선교사회를 대표하며 나라 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에 보고한다.
2. 나라 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 및 선출 방법은 나라 **모임에 위임한다**.

제 29 조 [위원회]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을 생산, 실행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 실행기관으로 분과위원회를, 한시적 실행기관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업무가 임원의 임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확대임원회의** 결의로 정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회 종류] **선교분과위원회, 복지분과위원회, 교육분과위원회, 정보통신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등을 둔다.

제 31 조 [소위원회 종류] 소위원회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등을 둔다.

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과 **확대임원회**에 보고한다.

2. **권역** 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권역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선출 방법은 권역 **선교사회가 정한다**.

제 28 조 [나라 대표]

1. **5가정 이상의** 선교사가 파송된 나라는 나라 선교사회를 조직한다. 나라 대표는 해당 나라 선교사회를 대표하며 나라 모임을 주관하고 연 1회 이상 선교국과 **확대임원회**에 보고한다.
2. 나라 대표는 파송된 지 5년 이상 된 이 중에서 **나라** 회원들이 선출한 이를 총회가 인준하고 선교국의 임명을 받는다. 임기 및 선출 방법은 나라 **선교사회가 정한다**.

제 5 장 위원회 및 특별조직

제 29 조 [위원회]

1.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한 정책을 생산, 실행하고, 필요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상설 실행기관으로 분과위원회를, 한시적 실행기관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업무가 임원의 임무와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
2. 분과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확대임원회가 제안하여 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소위원회의 설치, 조직, 권한에 관하여는 **확대임원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30 조 [분과위원회 종류] **전문인분과, 교회개혁및목회분과, 신학교및지도자교육분과, 학원선교분과, 한인교회분과, 자립선교분과** 등을 둔다.

제 31 조 [분과위원회의 조직]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 모임**에서 선출하고,

제 32 조 [위원회의 조직]

1.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회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산하에 부서를 두고 부장을 임명할 수 있다.
2. 분과위원장은 필요 시 분과 모임을 소집하고 그 활동 내역을 임원회와 확대임원회, 총회에 보고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회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출한다.
4. 소위원장은 필요 시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결과를 임원회에 보고한다.

선출하지 못할 시에는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선출 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분과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서기를 임명한다.

2. 분과위원장은 분과의 활동 내역을 확대임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32 조 [소위원회 종류] 소위원회로는 선거관리위원회, 회칙개정위원회 등을 둔다.

제 33 조 [소위원회의 조직]

1. 정기 총회 직전 확대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임원 1인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선거 업무를 관장한다.
2. 회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는 확대임원회에서 회칙개정위원장을 선출하고 회장과 협의하여 임원 1인을 포함하여 4인의 위원을 선출하여 회칙 개정 업무를 관장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기를 선임하고 소위원회의 모든 활동 내역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34 조 [특별 조직] 특별 조직으로 여성선교사회를 둔다. 여성선교사회는 여성 선교사로 구성한다.

제 4 장 재 정

제 33 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등록비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 34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선교사 위기관리 기

제 6 장 재 정

제 35 조 [재원]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등록비
3. 후원금
4. 기타 수입금

제 36 조 [회비] 본회의 회비는 총회의 결의에 따른다. 납부하지 않을 시는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어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경조사비와 선교사

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35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직후부터 차기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 36 조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7 조 [회칙 개정 발의]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의장의 발의
2. 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10개국 이상) 이상에 의한 발의

제 38 조 [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은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선교국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 39 조 [회칙 개정 의결]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선교국과 협의 후 총회에 상정하여 총회 재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0 조 [세칙 제정]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세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6 장 부 칙

제 41 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

위기관리 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 37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 총회 직후부터 차기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제 38 조 [결산] 본회의 세입세출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선교국 홈페이지와 본회의 공식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다.

제 7 장 보 칙

제 39 조 [회칙 개정 발의] 본회 회칙 개정의 발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한다.

1. 의장의 발의
2. 회칙개정소위원회의 발의
3. 회원 50인(10개국 이상) 이상에 의한 발의

제 40 조 [회칙 개정안 공고] 발의된 회칙 개정안은 선교국과 협의 후 총회 개최 1개월 전에 선교국 홈페이지와 본회의 공식 단체 대화방에 공고한다.

제 41 조 [회칙 개정 의결] 총회에 상정된 개정안은 총회 재석 인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2 조 [세칙 제정]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회칙을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세칙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 8 장 부 칙

제 43 조 본 회칙은 2010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

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42 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제 43 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4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제 44 조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된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제 44 조 본 회칙은 2012년 4월 17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한다.

제 45 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4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제 46 조 본 회칙은 2023년 4월 26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

제 47 조 본 회칙은 2025년 5월 1일 총회에서 통과한 즉시 발효된다.